

연구안전망 확보와 연구자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2024.08.31(토) 14:00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201호



## 1부 :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2부 : 토론회

- 사전 환영사
  - 정복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
- 사회: 박배균(연구자의집 운영위원장)
- 축사 및 격려사(TBA)
- 인사말
  - 최갑수(연구자의집 이사장)
  - 박중렬(비정규직 교수노조 위원장)
  - 선재원(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
  - 정두호(대학원생노조 지부장)

### 공동 주최

- 대학원생노조,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인문학협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지식공유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주관

- 연구안전망 확보와 연구자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 사회: 이미애(연구자의 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 인문학술장의 자율성과 재생산을 위한 소고
  - 발표: 김강기명(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 토론: 박서현(지식공유연대,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 연구자복지법 추진 경과 및 주객관적 조건
  - 발표: 김민환(연구자의집,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 토론: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 연구자복지법 기본법에서 공제회법으로?
  - 발표: 정두호(대학원생노조)
  - 토론: 김향수(성공회대 젠더연구소), 문종찬(노동공제연합 풀빵 운영위원장)
- 종합토론
  - 박중렬(한국비정규교수노조)
  - 선재원(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 이강준(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 최은혜(인문학협동조합)
  - 유정(교수노조)
  - 윤성준(만인만색)

### 후원

사회적협동조합 싸피 캠페인즈

## 목 차

- 발표 1 : 인문학술장의 자율성과 재생산을 위한 소고  
김강기명(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1
- 발표 2 : 연구자복지법 추진 경과 및 주객관적 조건  
김민환(연구자의집, 한신대 평화교양대학).....11
- 발표 3 : 연구자복지법 기본법에서 공제회법으로?  
정두호(대학원생노조).....14

## 인문학술장의 자율성과 재생산을 위한 소고

김기명(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최근 교육부는 주요 대학들이 ‘무전공 입학’ 비율을 25%까지 (사실상 강제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거센 반발에 잠시 물러서야 했다.<sup>1)</sup> 그 거센 반발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문송한’(문과라서 죄송한) 현실과 ‘인문학 위기’라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문과 계열, 특히 인문학의 제 학과를 선택하고 싶지 않아 한다. 이과 계열에서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은 소위 ‘문과 침공’이란 걸 한다. 일단 인문사회계열의 학과라도 학벌 높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과 전공으로 전과를 노리는 경우다. 인문학 전공의 대학원생 역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아직은 박사 학위가 전혀 안정적인 연구자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할 만큼의 ‘초과 공급’은 있어 보이지만, 이는 한편으로 최근 20여년 간 정규직 교원의 수요 자체가 줄어든 탓이 크고, 이것은 인문계 전공의 대학원을 점점 더 사람 갈 곳이 못되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앞으로 많은 연구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 자체가 끊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 상황은 ‘위기’(crisis)라고 보기 힘들다. 차라리 위기의 결과, 즉 ‘재앙’(catastrophe)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 재앙의 원인인 인문학 ‘위기’는 학부나 대학원 교육과정을 개편한다고 심화되거나,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문송한 현실이라는 재앙의 원인인 인문학 ‘위기’는 인문학의 수요자 측면, 즉 학생들이나 넓게는 ‘한국 사회’와 관련된 문제라기 보다는, 공급자 측면, 즉 연구자들 및 인문학술행정 분야의 제도 등의 인간-비인간 행위자들 차원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문학 위기’는 이제 그것의 참된 이름인 ‘학술장의 부재’라고 올바르게 불러야 하며, 여기서부터 지금이라도 가능한 일들을 찾아가야 한다.

‘학술장의 부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면 1) 인문 학술장이 학부나 대학원 입시, 혹은 교양 교육과정이나 교원 임용/승진/평가 및 연구비심사 시스템에 종속되어 돌아가고 있을 뿐 자율성과 고유성이 확보되지 있지 않다는 점, 2) 첫번째 문제와 연결되어, 학자들이 개인주의적 성과창출에만 몰두한다는 (혹은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학술장엔 어느 학교 나왔냐, 지도교수님이 누구냐는 학연은 있어도 이론적 친연성과 논쟁, 토론, 상호인정을 통해 형성되는 학술적 인간관계와 협업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대학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의 개편이 인문학 위기를 낳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바로 인문학술장이 고등학생과 그 학부모들에게까지 의존하고 있는 얼마나 비자율적 장인지를 역으로 확인시켜주는 현상일 뿐이다.

1) 이 발표문의 바탕이 된 글은 다음과 같다: 김기명. (2024). 부재하는 학술장과 슈뢰딩거의 석학들. 대학: 담론과 쟁점, 12 호, 178-198.

한없이 쪼개지고, 개별화된 오늘날 인문학술 연구장들을 고려했을 때 이 글에서 내가 인문학술장 모두를 대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없이 주제넘은 일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내 전공분야인 서양철학(특히 현대 이론들), 그리고 학문 분과로는 인문학 바깥으로 분류되지만 사회학이나 인류학, 문화, 미디어 분야 안에서 인문학적 방법론에 의해 이뤄지는 소위 ‘이론장’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한정하여, 최근 학위를 마치고 학술장에 진입하여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을 소박하게 나눠보려 한다. 좀 더 넓은 범위의 학술장에 관한 문제의식을 다루며 생산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최근 책으로는 『한국에서 박사하기』,<sup>2)</sup>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사례연구를 담은 책으로는 『하버마스 스캔들』을<sup>3)</sup>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이 두 책을 공감하며 읽은 사람의 응답이기도 하다.

### 교양인문학과 학술논문의 폭발적 증가에도 부재하는 학술장

오늘날 ‘인문학’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주장들과 달리 나는 (『하버마스 스캔들』의 논지와 얼마간 연결하여) 인문학이나 이론적 연구들이 한국 사회의 의제나 일상인들의 삶과 유리되었다던가, 학자들이 인문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글을 쓰지 못하여 위기에 빠져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은가? 서점 매대에는 인문학을 다룬 대중적인 교양서들이 차고 넘치고, 유튜브에는 인문학 셀러브리티들과 그 워너비들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중이다. 지금은 7-80년대처럼 함석헌이나 도올의 강의를 듣기 위해 종로를 찾아가 강당을 채우는 시대가 아니다. 인문학이 교양대중을 찾아가고 있다. 학자들은 ‘자리를 못 잡아서’ 생계의 길을 찾기 위해 교양과 학술상업출판의 영역으로 달려간다. 또 다른 학자들은 ‘자리를 잡은 김에’ 인문학 대중의 셀러브리티가 되어 개인적 평판을 높이려 시도한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인문학 위기의 한 모습이다. 학술장 바깥의 대중은 물론, 연구자들 스스로가 인문학을 ‘삶을 위한’ 것으로 여기면서, 인문학은 정말로 ‘삶을 위한’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학부 교양 수업에서 열심히 가르쳐서 문해력을 길러주고, 비판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인문학’이 된 것이다. 인문학은 삶 전반에 관한 것이고, 인문 이론의 탐구는 누구든 책을 읽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니 “비싼 장비와 실험재료 그리고 여러 해에 걸친 도제식 교육이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도 아닌 인문학은 대학 밖에서 하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김우재, “코로나 시대의 인문학”, 한겨레신문 2020년 6월 30일).

그런데 사실 대다수의 인문학자들은 이런 이야기에 일일이 반응할 시간이 없다. 교양, 교육, 학술상업출판 영역의 반대편에선 학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KCI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쓰고, 좀 더 노력하여 주로 영어로 SCI나 A&HCI 같은

2) 강수영, 김보경, 유현미, 이송희, 조송희, 전준하, 현수진, 이우창. 2022. 『한국에서 박사하기』. 서울: 스리체어스.

3) 이시윤. 2022. 『하버마스 스캔들. 화려한 실패의 지식사회학』. 서울: 파이돈.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을 쓴다. KCI 한쪽에 100점, A&HCI 한쪽에 100점에서 600점(학교마다 다르다). 1년에 200점에서 1000점 정도까지, 연구자라면 응당 개인 실적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개인점수가 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신청하거나, 교수 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은 현실감각 없는 사람이 된다. 창조적 역량과 체력이 어마어마하거나, 하나의 아이디어로도 여러 편의 논문을 잘 쪼개서 쓰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1년에 여러 편의 논문을 푹푹푹 쓰지만 필자와 같은 보통의 인문학자들은 1년에 두 편의 논문을 쓰면 이미 기진맥진이다. 그런데 이 글들은 누가 어떻게 읽을까?

인문사회분야의 제 영역에도 자연과학의 경우처럼 학술지 논문이 주된 교류 수단이고, 그래서 인용지수를 통해 학문적 퀄리티를 논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는 하겠지만, 앞서 말한 이론장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이 논문들은 그다지 읽히지 않는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상술하자면 여기서 ‘읽는다’는 건 논문을 읽는 행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논문 출판’의 가장 주된 목적과 관련된 읽기 행위, 즉 동료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의 재료로 읽고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인문학술 이론장의 연구자들의 논문은 그런 의미에서라면 별로 ‘읽히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한국인 연구자들의 이론 연구를 읽지 않아도 내 개인점수를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이론 논문을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는 별처럼 빛나는 철학 대가들의 저작들이 있고, 영미 학술장엔 내 논문의 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중견, 석학들의 논문이나 단행본이 많다. 내 영혼이 그들과 직접 교통하는데, 굳이 옆을 돌아볼 필요는 없다.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 이론의 대가나 석학이 없기 때문일까? 많은 연구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에는 서구 이론의 해설자들만 있지 한국적 상황에서 길러낸 창조적 이론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반응이나, ‘서구에서 인정받는 책을 쓴 (한국 학술장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 이론가가 얼마나 되나’ 같은 반응들이 대표적이다. 확실히 아주 작은 극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그런 이론가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연구자 개개인의 실력을 문제 삼는 의미에서 대가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에 동의하기도 힘들다. 한국의 이론 대가나 석학은 말하자면 지금 모두 ‘슈뢰딩거의 석학’이다. 많은 이들이 박스 속에서 ‘석학임’과 ‘석학 아님’의 중첩상태에 놓여 있다. 확인을 하려면 뚜껑을 열고 관측적 개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서로의 저작을 읽고, 인용하고, 토론 주제로 올리고, 그 사람에 대한 논문이나 책을 쓰지 않으니 슈뢰딩거의 석학들은 지금 계속 박스 안에서 존재하며 비존재한다.

즉 한국 인문학술 이론장엔 좁은 의미의 ‘학술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한국인 학자에 대한 책은 그 사람이 1) 대학의 정교수였고, 2) 대학원생이 있었으며, 3) 은퇴를 하면 나온다. 이론을 다루다 보면 현대 철학의 대가들로 꼽히는 프랑스 철학계의 거두들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들의 이론들을 다들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서로에 대한 글을 쓰고, 서로를 띄워주고(비판이 부재하다는 뜻이 아니다) 있는지는 그다지 심도 깊게 보지 않는 것 같다. 이를테면 들뢰즈가 『푸코』를 쓰듯, 철학자 진태원이 『서동진』이라는 책을 쓰는 일을 한국에서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아니, 그래도 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의 시대를 지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인 이론 연구자들이 서로를 호명하면서 (주로는 비평의 관점에서) 연구의 주제로 삼는 일이 간간히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대화조차도 질식된 지 오래다. 이런 저런 학회 등의 공간을 통해 학자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이 이뤄지긴 해도 대부분은 서로의 (서구 이론) ‘독해’나 ‘번역’에 대한 토론이지 서로의 ‘이론’을 중심에 놓은 토론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학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집단적으로 몰두할 쟁점을 던지고 주도할 만한 좌장급 학자 또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신진 영문학자인 이우창은 『한국에서 박사하기』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학계의 존재이유를 설득할 수 있는 스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소셜 미디어에서의 반응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라는 말을 (위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TV에 나오는 ‘인문학 셀레브리티’ 정도로 치부한 것 같다. 이우창의 이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 학술장에서 명망의 정점에 서서 다른 이들도 사용하는(할 수밖에 없는) 독자적/독창적 개념들을 주창하여 이론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좌장들을 뜻하는 것일 테다. 나는 그런 스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에도 많이 동감한다. 스타 한 명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다. 인문학술장 밖에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 부르디외가 말한 ‘상징폭력’의 한 예일 것이다 - 대가가 있다는 것은, 이 대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연구집단이 있고, 그가 확보할 수 있는 연구비가 있다는 뜻이고, 그걸로 이 연구집단 안팎의 다양한 학자들이 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책을 내고, 서평을 쓰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뜻일 테다. 이러한 학술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자들은 매우 이른 커리어 단계부터 파편화되어 자기 전공 분야의 논문을 쓰면서 점수를 채워 임용시장에 도전하고, (글재주가 좋은 사람이라면) 대중독자들을 겨냥한 서구이론의 해설서나 좋은 교양서, 혹은 번역서를 내서 직접 학술상업출판 시장에서 명망을 획득하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개인주의적 해법에 몰두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인문학술장의 형해화가 재생산 되고, 사람들은 ‘인문학의 위기’를 입에 올린다.

각 분야의 학술장에서 자신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을 보면, 아이러니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항상 혁신, 경쟁, 선도를 말하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학자들은 언제나 ‘과학자 공동체’라는 말을 즐겨 쓰고, 실제로도 자연과학/공학이 과학자 공동체의 공동의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인문학자들은 연대와 협동, 평등을 말하는 진보적, 좌파적 인문학자들조차도 ‘인문학자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일이 드물다. 인문학은 마치 고독한 개인이 홀로 하는 학문인 것처럼.

## 논문점수나 출판시장이나

학술장 내의 연구자들에게 무언가를 해보라고 호소하기 전에, 연구자들이 지금과 같은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연구자 주체성을 갖게 되는데 있어 현재 한국의 인문 학술진흥 정책이나 고등교육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인문사회계 연구자들이 아주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위해서조차 극도의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치현은 “한국의 교수직이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연구과 교육의 물적 토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학문후속세대의 지식인들은 “구조적 하방(下放)”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다.<sup>4)</sup> 예전에 ‘지식인’과 ‘민중’을 나누는 담론이 지식인이 중산층이라는 점을 자명한 사실로 하였다면, 지금은 박사학위를 가진 다수의 지식인들의 곧 불안정 취약계층, 즉 프레카리아트의 일부가 된 것이다. 이는 특히 인문학 분야 및 이론이 중심이 된 분야들에서 심각한데, 실험실 내의 다양한 직군이나, 민간기업들까지 포함된 고용시장이 존재하는 이공계와는 달리, 개인연구가 중심인 이 분야에선 테뉴어 트랙 교수로 임용된 극소수와 다수 연구자들 사이에 학술적 자원, 안정성, 소득, 삶의 전망 등 차원에서 절대적인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년트랙 전임교수가 아니라면 누구도 정년까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계를 꾸릴 가능성이 없기에 연구자들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장기적인 연구 의제를 제쳐 두고 (테뉴어 트랙을 정점으로 하는) 고용시장에서의 경쟁을 중심으로 단기적 학술활동(논문 점수)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학술상업출판과 학교 밖 인문 강의 등 영역에서 대중을 상대로 이름값을 올리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다. 이 둘 모두 연구자들을 학술장의 형성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는 개인주의적 생계/명망 추구의 장이다. 한 개념이나 분야를 다루는 학술장의 형성엔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동료학자들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한국에서 이런 동료 연구자는 고용시장에서건, 학술상업출판 영역에서건 경쟁자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아주 이른 커리어 스테이지에서부터 이 (소위 ‘핏이 겹치는’) 동료 연구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작업을 경계하고, 얹잡아 보고, 언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의 조성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한국의 인문학 장은 학자들이 장기적 연구의제를 추구한 끝에 나오는 양질의 학술전문단행본과, 이런 책들에 대한 서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학자들 사이의 상호 인정과 토론이 부족한 영역이 되고, 이는 또다시 ‘인문학 별 거 없네’라는 학술장 바깥의 평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많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인지, 현재 연구재단은 이전의 시간강사 지원사업이나 박사후 연구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형, B형)을 운용한다. 이 제도는 인문사회분야는 이공계와는 달리 연구자 개개인의 인건비가 곧 연구비의 거의 전부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4) 박치현. 2023. “한국 대학 교수직의 카스트적 분화와 ‘지식인’의 장소.” 시민과 세계, 42 호: 93-122.

B형은 연구자에게 1년간 최소생계비를 주며 매년 신청할 수 있는 ‘생계형’ 제도지만, A형은 5년 동안 연구자의 인건비(연 4000만원 규모)를 지원하여 중기 연구 의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형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테뉴어 트랙 교수직이 태부족한 현실에서 징검다리가 과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아니, 지금 상황에서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게 징검다리가 맞는 지부터 물어야 한다. 과연 ‘교수가 된다’는 게 현실에서 가능한 옵션인가? 많은 연구자들은 지금 ‘교수가 아니어도’ 계속 연구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부생들이 역대에 가까운 연봉이 고파서 인문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삶의 안정조차 기대할 수 없다면, 누구도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을 것이다.

### “국가박사제”가 있다면...

박치현은 현재 1년에 300여명 선발하는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형(총인원 1500여 명)을 확대한 ‘국가박사제’를 제안한 바 있다.<sup>5)</sup> 쉽게 말하면 국가가 총인원 15,000명 정도의 박사급 인문사회 연구자 인력 풀(pool)을 운영하면서 개인연구자들과 각급 대학의 강의 인력 및 연구인력(연구소 전임)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격을 갱신할 기준을 충족한다면 현행 A형 학술연구교수 수준의 국가박사들에게 정년까지 재임용기회를 주어 직업 안정성을 주자는 제안이다. 박치현의 계산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기준으로 연간 1400억원으로 2024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형 예산(603억원)의 두 배 조금 넘는 수준이고, 인문사회연구소/대학중점연구소 등의 전임연구인력 등도 이 제도로 포함될 수 있으니 실재 현재의 국가 인문사회지원사업 예산(2024년 4220억원 규모)에서 그렇게 큰 상승이 발생하진 않는다.

이런 제도가 있다 해도 대학에 대해 소명감과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은 높은 소득수준과 활동성을 보장하는 테뉴어 트랙 교수로의 길을 계속 추구할 수 있고, 상대적이라도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도 좋으니 계속 연구자로 남아있고 싶은 사람은 국가박사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연구자들의 최저 생계와 고용이 안정될 수 있다면 장기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학문후속세대 역시 대학원 진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술장 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불필요한 경쟁이 완화되면서 연구자들 간의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5) 박치현. 2022. “대학의 위기와 학술생태계: 대학과 연구(자)의 상생을 위하여” 69 (0): 1-30.



## 학술전문출판의 부재

현재의 여러 제도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꼽자면 학술지 논문 중심의 평가제도와 (박사논문을 포함) 학술전문 단행본에 대한 체계적인 경시라 할 수 있다. 앞서 한국의 인문이론 학술장의 연구자들이 서로의 작업에 대해 무시하거나 읽고 토론하지 않는 경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경쟁체제에서 비롯된 심성의 구조도 있겠지만, 많은 연구자들의 글이 단편적인 논문들로 쪼개져 있다는 것에도 기인한다.

한 사람의 이론적 연구성과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한 이론가가 중장기적 연구를 통해 최대한의 깊이를 추구한 ‘단행본’을 보아야 우리는 그의 사상과 이론의 총체를 그려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대부분의 대학은 임용과정에서 ‘최근 2년’부터 ‘최근 4년’ 사이의 논문 실적만을 양적/질적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연구재단의 각종 인문사회 지원 사업은 그래도 단행본(번역서 포함)에 KCI 등재지 3편의 가중치를 두긴 하는데, 아마 인문사회 영역이라도 각 분과 혹은 학술장마다 연구자 평가와 인정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 그 중간지점에서 주어진 기준 같아 보인다. 인문학술장, 특히 이론으로 한정한다면, 이런 시스템은 학술장 형성은 물론 개별 연구자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물론, 연구재단 등재지 및 SCI급/Scopus 급 학술지 체제와 이와 연동된 교원 임용/승진/평가 시스템은 인문학자들에게서 이전보다 많은 논문을 뽑아내는 데는 성공했다. 문제는 ‘논문만’ 뽑아냈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이 학술전문 단행본에 대한 경시 풍조를 최초로 경험하는 것은 박사논문 때 부터다. 한국에서는 모두가 박사논문을 우습게 본다. 한 연구자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모두가 어떤 충고를 하느냐면, ‘(박사논문에 기초한) 단행본을 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2-3년간 박사논문의 챕터들을 다듬고 발전시켜서 논문 여러 개로 출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점수’를 먼저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자의 박사논문이 학술장에 제출되어서 토론대 위에 놓여야 할 노작이 아니라 앞으로 강사 자리, 조교수 자리 하나 얻기 위해 제출한 자격증 정도로 여긴다면, 박사논문 심사도 그것에 준한 기준을 따라 이뤄지고, 그렇게 세상에 나온 박사논문은 개별논문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진지한 학술적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된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많은 분야에서 지도교수/부지도교수가 직접 박사심사위원회의 주/부임을 맡는데, 보통 15쪽 내외의 문서로 작성되는 두 편의 박사논문 평가지에서 심사 기준은 ‘그대로 학술전문 단행본으로 출판가능한가’에 있다. 박사논문은 보통 적은 부수라도 편집을 거쳐 학술출판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고, 세상은 지도교수의 평가를 믿는다. 다른 나라 학교들도 그렇게 나온 박사논문의 퀄리티를 믿는다. 학술장의 자율성이 매우 낮은 한국에서는 철저히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평가는 정실주의의 온상처럼 보일 것이다. 영어권의 인문 학술장에선 박사논문 자체에 대한 인정 수준은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낮지만 연구자가 좋은 커리어를 쌓는 것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박사논문을 재료로 한 첫번째 학술전문서를 유수의 학술전문출판사에서 출간 하면서부터다. 적어도 이들 나라에서 한국처럼 인문학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이공계적

평가 시스템인 학술지 논문 숫자 같은 것에 맡긴 곳은 없다.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는 박사논문을 시작으로 몇 년에 한번씩 단행본으로 연구 작업을 갈무리할 동력이 없으니 연구자들의 작업은 작은 논문 단위로 분절된다. 그럴수록 동료연구자가 상대방의 연구를 한국의 학술장에서 토론해야 할 하나의 ‘이론’으로 무게감 있게 바라보고 인용하고 토론하기도 쉽지 않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박사논문이 단행본으로 나와 상징적으로라도 넓은 독자군을 만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인용 및 평가에서 어떤 점수도 받을 수 없는데, 학위를 받고 나서 박사논문을 또 몇달의 노고를 거쳐서 책으로 출간하는 일은 자살행위기 때문이다. 누가 읽을 지도 모르는 학술지 논문으로 쪼개서 내야 학자로서 연명이라도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 그 분야 학술장보다 좀 더 넓은 독자군이 박사논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학술전문 단행본과 서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문적 토론은 ‘이 분야 연구자들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술장이 ‘상징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재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그러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들은 위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주의적 생존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학술장이 행사하는 상징폭력이 없는 상황에서 학술상업출판사들은 사람들이 읽지 않을 국내 학자들의 학술전문서를 펴내느니, 최근에 박사를 받고 해외의 전문학술서적 출판사에서 단행본을 낸 (즉, 검증된) 젊은 북미/유럽학자들의 책을 번역하는 편이 수익과 이슈몰이 면에서 낫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박사논문이 과연 정말 한국의 신진인문학자의 그것보다 나을까? 슈뢰딩거의 박스를 열어보지 않았으니 알 수 없는 일이다.

### 대학출판부를 살린다면...

지금 상황에선 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인문 학술장의 인큐베이팅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미 여러 제안들이 나와 있듯, 인문학술장의 구성원들은 힘을 모아서 학술지 논문에만 편중되어 있는 평가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술전문출판사를 통해 나오는 학술전문단행본과 연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펴내는 공저 논문집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양적 기준에서, 박사논문을 포함하여, 학술지 논문과 같이 엄격한 동료평가와 학술전문 편집인의 편집을 거친 단행본에 600점 정도 점수를 준다면 학자들은 박사논문 집필과 심사 단계에서부터 더 엄격하게 학술단행본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할 것이다.

물론 사회적 신뢰가 매우 낮은 한국이니 만큼 공신력 있는 퀄리티 컨트롤은 어쩔 수 없이 요구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의 교재 출판 정도에 머물고 있는 대학출판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출판부의 인문사회 전문서 출판 성과를 대학평가에 중요하게 반영하고, KCI 등재 학술지처럼 ‘KCI 등재 총서 시리즈’ 같은 것을 운용하여 동료평가를 통해 검증된 책들이 나오게 한다면 어떨까?

서강학술총서나 대우학술총서 등의 선례들을 더 확장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몇 개 대학출판부를 전문인력을 보유한 매머드 급 출판사로 키우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혹은 인문학술사업을 기업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삼은 기업들을 독려하여 민간출판사들의 학술전문영역을 키우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국가박사제’ 하에선 바로 이런 총서 시리즈의 편집자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또한 국가 박사 pool에서 수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전문출판 영역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한 주제에 대한 공저 논문집을 기획하고 편집하는 학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정당한 평가를 부여하는 일이다. 사실 이 사람이야말로 곧 학술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좌장이나, 기획자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서평논문 역시 동료평가를 거쳐 논문과 같은 정도로 평가해 줄 수 있어야 학자들이 서로의 글을 놓고 토론을 이어갈 유인동기가 될 것이다. 현재의 평가 시스템 하에선 가장 쓰지 말아야 할 글이 동료 연구자들이 쓴 글에 대한 서평과 리뷰다. 하지만 해외의 활발한 인문 학술장들을 보면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물 만큼이나 많이 쓰는 글이 서평, 리뷰, 심사고, 학술지보다 더 중요한 작업이 학회를 열고 필자를 모아 논문집을 편집해서 내는 일이다.

#### **결론: 우리들의 학술정치와 학술비지니스가 필요하다**

한국의 인문학자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오래된 착각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좋은 논문을 쓰면, 좋은 책을 쓰면 사람들이 읽고 토론해 줄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오래된 착각은 ‘인문학은 인문학자 개인의 치열한 탐구와 고뇌의 산물이다’라는 것이다. 아니다. 인문학은 곧 학술정치요, 학술비지니스다. 이 말은 학술장 바깥의 정치논리나 비지니스논리가 학술장에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학술이 그 자체의 정치논리, 비지니스논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이라는 사실 기술이다. 사실 아주 예전부터 그랬다. 교수도 학생도 소수였던 시대를 지난 지금, 학술장 자체의 정치/비지니스 논리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좋은 논문을 쓰는 것 외에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쓴 좋은 논문을 읽고 토론해 줄’) 좋은 학술장을 만드는데 학자들이 공을 들이지 않으면, 젊은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서로 분절된 채로 내용은 좋지만 읽히지는 않는 많은 논문들을 쓰고, 그 이후는 정년트랙이나 아니냐 상관없이 이런 저런 이유로 연구의 활력과 동기를 잃어가거나, 그 극복방안으로 대중적인 철학책과 교양서를 쓰면서 학술장 바깥에서 개인적 인정을 구하는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슈뢰딩거의 박스는 열리지 않고 우리는 이론의 대가 하나 없는 학술장의 연명을 바라며 학생들에게 대학원에 오라는 문송한 말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비판적 정신의 수호자인 우리 인문학술장의 연구자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서로를 많이 칭찬하고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더 어처구니 없이 들릴 지 모르겠지만, 나는 학술장에서 개별 연구자의 ‘퀄리티’는 결국

이차적이라고 생각한다. 읽어 주고, 평가 해주고, 논쟁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기에 그 연구자의 ‘퀄리티’가 논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퀄리티가 올라간다). 특히 어느 정도 학술장에서 명망을 가진 연구자들일수록 자기 연구만 하지 말고, 동료 연구자들, 신진연구자들의 논문이나 책을 많이 보고, 비판적이면서도 존경과 인정을 담은 리뷰를 많이 써 주었으면 좋겠다. 제도권의 잡마켓이나 학술상업출판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해 야기된 고약한 심성은 내려놓고 동료 연구자들의 성과가 나의 성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 무엇보다 힘을 합쳐서 이런 저런 제도의 변화와 예산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 연구자복지법 추진 경과 및 주객관적 조건

김민환(한신대)

### 1. ‘연구안전망’ 구축과 연구자 상호부조의 가능성 모색

2018년 12월 21일 민교협 주최로 <새로운 학술행동과 연구자의 집>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연구안전망’ 구축과 연구자 상호부조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는 2017년 무렵부터 제기된 ‘연구안전망’이라는 개념을 적극 받아들여 소개하고 그것의 실현 방법을 소박하게 상상해보는 것이었다. 이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이 제안을 자기나름대로 상상하면서 다채롭게 논의를 확장시켰다. 기존의 지식인운동이나 학술행동과는 다른 형태의 ‘연구자 운동’이 필요하고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인식이 넓어진 것이다. 이 새로운 ‘연구자 운동’은 당사자 운동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불안정한 처지에 있던 소위 ‘불안정연구자’들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및 대안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황조사는 대체로 이들 불안정연구자들의 어려움을 잘 드러냈다고 평가를 받는다. 반면, 대안의 경우, ‘연구진흥’ 혹은 ‘학술발전’의 틀을 기본으로 하여 제안되었다. 또 이런 대안들이 실제로 정책화되어서 실시되기도 했다. 그런데, 연구가 진흥되고 학술이 발전된다고 해서 그것이 불안정연구자의 생활 및 연구활동의 안정과 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연구가 아닌 연구자를 중심에 두는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 2. 연구자 권리 선언과 그 의의

이 문제의식이 연구자들에게 확산된 중요한 계기가 2020년 11월 16일 발표된 ‘연구자 권리 선언’이었다. 14개 연구자단체(경남민주교수연대, 대학원생 노조,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대개혁 지식인네트워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자의집, 인문학협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지식공유연대, 포럼 대학의 미래,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이하 가나다 순)로 구성된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도해서 발표한 이 권리선언에 1,700여 명의 연구자가 서명하였다.

‘연구자 권리 선언’은 연구 및 연구자와 관련해서 두 개의 위기, 즉 ‘연구의 공공성 위기’와 ‘연구자의 생존 위기’가 존재하며, 이것이 야기한 우리 사회 전체의 지적, 정신적, 도덕적 퇴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스스로의 정당한 노력에 더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양극화된 노동시장, 신분제적 위계 구조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

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학 붕괴가 현실화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삶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공포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단지 연구자라는 특정 직종의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였다.

우리 나라 헌법 제22조의 ①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와 ②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는 ‘연구자’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의 이 조항에 의해 ‘예술가복지법’ 제정이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성을 얻었다. 반면, ‘연구자’라는 사회적 범주와 이들의 사회적 의미 및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야 할 어떤 헌법적 가치 등이 별도로 필요한데, ‘연구자 권리 선언’은 연구자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서 그것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받는 첫걸음으로서 의의가 있다.

### 3. 연속된 ‘연구자복지법’ 토론회와 몇몇 쟁점

‘연구자 권리 선언’ 발표 이후 연속된 ‘연구자복지법’ 토론회가 있었다. 가장 먼저 토론 주제가 된 것은 ‘예술가복지법’ 제정에 참여한 분들의 경험을 듣고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야기된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우선,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복지법’은 임금노동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예술가복지법’은 이 체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 소위 ‘노동-복지’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예술가복지법의 구체적 실현 방안도 어떤 일을 주고 그것에 대한 댓가를 받는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예술가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외부 기관을 신설하여 예술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서 그 증명서를 갖는 사람을 예술가로 정의하기로 했다. ‘연구자복지법’ 관련해서도 누가 연구자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연구자 권리 선언’에서도 연구자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셋째, 예술가복지법 제정 이후 그것의 실행기관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여기에 1년 예산이 배정되어 그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매우 많다고 하였다. 예산 소진 이후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 예술가를 이 재단에서 ‘선별’한다는 점, 즉 예술가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신규 혜택을 받을 예술가들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 예술가들의 연대가 확장될 수 없는 구조라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여성, 대학원생, 비정규교수 등 불안정연구자 내의 여러 범주들과 함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2023년에는 ‘연구자의 집’이 경인사연의 과제를 받아 마련한 ‘연구자 공제회법안’을 마련하였고, 2023년 12월에는 관련 교수, 연구자 단체 합동 송년회에서 이 내용이 소개되었다.

‘연구자복지법’이라는 기본법의 형태에서 ‘연구자공제회법’이라는 다른 형태의 법안이

제안된 배경은 앞에서 이야기한 ‘예술가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토론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두호 대학원생노조 지부장의 발표에서 다루어질 것이니 생략하겠다.

#### 4. ‘연구자공제회’에 대한 주객관적 조건

사회적으로 다양한 직종에서 ‘공제회’ 관련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아직 공제회법이 제정되지 않지만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제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나 ‘풀뿌리’ 등에서 여러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익적 사회활동가, 방송작가, 구두장인 등 다양한 직공에서 이미 공제회를 조직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할지 단독으로 연구자 공제회를 구성할지 등 논의할 내용은 많지만, 공제회라는 구상 자체가 일종의 보편성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또, ‘연구자의 생존 위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광범위한 동의가 연구자들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다. 다만, 이런 논의가 교수연구자 단체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 단체 외부에 있는 연구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연대를 형성해 갈지가 관건이다.

## 연구자복지법, 기본법에서 공제회법으로?

정두호(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한국 사회에서 연구 노동은 지속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인문학의 철학 전공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한국연구자정보(KRI)에 등록되어 있는 철학 전공자는 50대 약 900명, 30대 약 250명이다. 전공자 수가 2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학문으로서의 철학의 위기를 나타내며 전공의 다양성 또한 심각하게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문사회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추세이다.

일부 연구자들이 대학이나 한국연구재단 소속으로 강의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된 기회로 연구자들의 불안정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문사회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지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경우 2024년 선정률 24.6%에 그쳤으며 B유형의 경우 선정률 약 30%로, 사업 시행 초기 선정률 약 60%에 비교해봤을 때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를 비롯한 일반연구지원, 저술출판지원사업, 명저번역지원사업 등 2024년 인문사회분야 신규과제 평균 선정률은 21.2%이다. 즉, 10명 중 8명은 1년 동안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자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특히 2021년 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 ‘기초학술기본법안’, 2022년 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 ‘기초학술기본법안’, 그리고 2023년 유기홍 의원 대표 발의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등, 실제 입법 절차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이처럼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다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연구자 복지법으로 기본법이 아닌 공제회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법의 경우 법적 수혜 대상에 대한 법과 그 대상에 대한 기본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법의 경우 대표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을 들 수 있는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과 ‘예술인 복지법’, 크게 두 가지 법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술 활동의 의미와 예술인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즉, 기본법을 통한 안전망 구축은 두 단계로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예술인은 헌법 제22조 2항 “저작가·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와 같이 헌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공제회법의 경우 해당 법만을 제정하면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연구자 공제회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연구자를 정의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둘째, 기본법의 경우 국가 예산에 의해 사업 방향과 규모가 정해지는 등 국가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2023년 R&D 예산 삭감 사태를 통해 국가 주도의 사업이 가지는 위험성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제회법을 통해 법적 교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연구자, 예비 연구자 등을 폭넓게



포괄하여 연구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자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자 공제회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을 뼈대로 한다. 그 이유는 건설근로자의 초단기 노동, 비연속 노동 등과 같은 근무 형태가 불안정 연구자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자 공제회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쟁점 또한 존재하는데, 첫째, 사업주가 다양하다. 연구자의 경우 사용자가 학교, 기관, 정부 부처 등으로 강의에 따라, 사업에 따라 사용자가 다를 수 있다.

둘째, 연구자의 범위 또한 합의가 필요하다. 202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 연구총서 2023-02 “대학 밖 학술단체에 대한 현황조사와 불안정 연구자를 위한 지원 및 연구안전망구축 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자 공제회법 가안에 따르면, 제2조(정의) 2항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내의 연구자로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자와 「고등교육법」 제29조2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원대학에 재학·수료 등을 하거나 한 자를 말한다”로 제시되어 있다.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교원 및 겸임교원, 평생교육시설 교원, 연구원, 과학자 및 예술가, 박사학위소지자 등인데, 여기에 「고등교육법」 제29조2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생을 포함한 것이 연구자 공제회법 가안의 연구자의 범위이다. 이것이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 연구자 및 예비 연구자 등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자의 자격 증명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아래 연구자의 자격 예시 표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자의 자격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즉,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연구실적, 강의실적 등으로 연구자의 자격을 등록 및 갱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몇 편의 논문을 기준으로 할지, 몇 년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연구자의 자격 예시>

| 지위                  | 상태   | 증명                      |
|---------------------|------|-------------------------|
| 전임 교원               |      | 재직증명서                   |
| 박사학위 소지자            | 소속 O | 재직증명서                   |
|                     | 소속 X | 연구업적 5년 1편<br>강의 5년 3학점 |
| 대학원생<br>(박사학위 미소지자) | 수료   | 연구업적 5년 1편              |
|                     |      | 수료 5년 미만                |
|                     |      | 강의 5년 3학점               |
|                     | 재학   | 재학증명서                   |

연구자 공제회법은 가안 제1조(목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이 법은 연구자의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연구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고등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자 공제회법에서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연구자 공제회는 퇴직공제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연구자의 연구 생애 주기에 맞춰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논문 게재료 지원, 저금리 등록금 대출, 도서 구입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연구자 공제회법 제정과 공제회 운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또한 존재한다. 첫째, 공제회법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인원을 갖춰야 한다. 둘째, 공제회는 연구자와 사업주, 국가의 재원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학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연구자 공제회법은 기본법보다 절차상으로는 간단하나 여전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 해결하는 문제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속한 연구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법보다 공제회법이 효과적이며 퇴직금을 쌓을 수 없는 불안정 연구자의 퇴직금 지급과 더불어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최소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재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안으로 연구자 공제회법을 제안한다.

[별첨 1]

연구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연구자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연구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고등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연구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이하 “고등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연구자로서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자와 「고등교육법」 제29조2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원대학에 재학·수료 등을 하거나 한 자를 말한다.
3.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연구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연구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고등교육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연구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연구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연구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3. 연구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인력 양성 등 연구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5. 연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임금·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 고등교육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7. 방학 중 연구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고등교육 분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권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안정
3.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4. 복지증진

## 제2장 연구자의 고용개선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연구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연구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연구자를 고용한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연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

한다)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 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자의 고용개선 등) ① 교육부장관(제1호의3 및 ⑤의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다)은 연구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 1의2. 제1호의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및 훈련과정의 개발·보급
  - 1의3. 고등교육 분야의 인력수급 실태 조사 및 관리
  2. 연구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3. 연구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4.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연구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제3장 공제사업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연구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공제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 6. 연구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6의2. 연구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제1호의 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 3. 제2항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 4. 그 밖의 수익금
- ④ 공제회는 제1항제6호의2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공제회는 연구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연구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이사회)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

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5. 직제, 회계, 보수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회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구체적인 운영실적
2. 자체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공제회 이사장
2.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
3. 고등교육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4.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5.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③ 공제회의 모든 회계는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고등교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을 하는 사업주는 그 고등교육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고등교육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고등교육 완료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제10조의3(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고등교육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①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 강의시수가 5년 내 3학점 미만인 자
2.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 연구업적이 5년 내 1편 미만인 자
3. 대학원·대학원대학 수료 상태가 5년을 초과한 자
4. 대학원·대학원대학에 재학 중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② 연구업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KCI 등재(후보)지
2. SCI, SSCI, A&HCI, SCOPUS 등재지
3. 저·역서
4. 그 밖에 이사회가 인정한 학술지

제12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③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고등교육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연구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퇴직의 증명 등)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반환요구 등) ① 공제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을 반환하도록 한다.

② 사업주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제16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탈퇴 사실을 연구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공제회는 연구자의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시효)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제4장 보칙

제20조(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 사업주 및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제21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공제회는 제13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에 따른 고지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2.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3. 법무부장관에게 피공제자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기록 및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목록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제5장 벌칙

제22조(벌칙) ①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휴게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